

국제정보유통과 정책과제

김 미 진*

목 차

1. 서 론	3.5 국제통신위성기구 (INTELSAT)
2. 국제정보유통의 발전	3.6 국제표준화기구 (ISO)
2.1 역사적 배경	4. 국제정보유통의 정책과제
2.2 정보유통의 국제화	4.1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3. 국제정보유통 관련기구의 활동	4.2 국가주권
3.1 유네스코 (UNESCO)	4.3 문화적 주권
3.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4.4 경제적 주권
3.3 IBI	4.5 정보유통의 불균형
3.4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5. 결 론

1. 서 론

컴퓨터기술과 전기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앨빈 토플러 (Alvin Toffler)는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이라고 명명하고, 이 사회에서는 생산의 중심이 정보나 서비스의 생산으로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자본으로부터 정보로 이행한다고 지적했다.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을 의미하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그리고 근래에 일고 있는 변화인 정보통신혁명을 제3의 물결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호로비츠 (Horowitz, 1993, p. 171)는 정보기술혁신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전반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면서 “오늘날 세계의 후진국들은 산업혁명을 늦

* 전주대학교 문현정보학과 조교수.

게 이행하였으나, 반면에 정보사회의 후진국들은 정보혁명을 늦게 이행한 국가들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보의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정보사회가 등장하게 된 기술적 배경은 컴퓨터와 전기통신 등의 정보기술혁신이 가져온 새로운 사회적 기술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컴퓨터기술은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으로는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자료보존이나 계산처리를 매우 짧은 시간에 가능케 하였다. 컴퓨터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활용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경영과 행정분야의 기술혁신을 가져왔다. 한편,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디지털화와 전송매체의 기술개발에 의해 통신의 신뢰성,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광섬유의 개발은 많은 양의 정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였으며, 위성통신의 발달은 지리적 제한을 넘어서 지구촌시대를 도래하게 되었다. 맥루한 (Marshall McLuhan)은 오늘날의 국제사회를 “지구촌 (Global Village)”이라 표현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통신기술에 의해 세계 국가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나온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국경을 초월한 컴퓨터에 의한 상호작용의 증가를 통해 전 세계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고도의 네트워크 사회가 형성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국제적 정보망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 정보네트워크의 확대에 따른 越境데이타유통, 이른바 Transborder Data Flow (TDF)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예를들면, 연관된 통신규모의 방대성, 데이터의 독점적 또는 비공개적 특성, 그리고 데이터유통을 측정하는 방법상의 문제 등이 越境데이타유통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越境데이타유통 (Transborder Data Flow)의 성장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온라인 정보산업 규모와 성장을 설명하는 통계를 통하여 쉽게 추측할 수 있다 (Duchesne, 1990, p. 361). 약 5년 동안 (1980-1985) 미국에서 데이터베이스 검색양이 600만에서 3배 증가된 1천 800만이 되었으며, 미국 이용자의 온라인 연결시간은 1982년에 120만 시간에서 1985년까지 2배 증가된 220만 시간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7년 동안 (1980-1987) 이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수는 600에서 약 6배로 급격히 증가된 3천 499이었으며, 또한 데이터베이스 생산업자의 수는 7년 동안 급증 (340--1,602) 하였다. 통신서비스로부터 얻은 전 세계의 수입은 1980년에 1천 386억 달러로부터 1985년에 2천 17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5년 동안 (1980-

1985) 국제적인 통신서비스의 연평균 성장율은 9.4%였다.

1970년대부터 정보유통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UN, Unesco,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등의 국제회의에서 논쟁의 촛점이 되었다. 越境데이터유통 문제는 원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응용분야의 확대에 따라 취급하는 데이터도 문자만이 아니라 도형·음성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越境데이터유통 (TDF) 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정보유통 (International Information Flow, IIF)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한 국경간의 정보교환”으로 가장 간략하게 정의 될 수 있는 越境데이터유통 (Transborder Data Flow)은 정책입안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것 보다 빠르고 복잡하게 통신구조의 고도화가 확산되면서 성장한 문제로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제정보유통에 관한 정책적 발전과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조사, 분석하였다.

2. 국제정보유통의 발전

2.1 역사적 배경

정보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복잡한 환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이 서독의 헤세 (Hesse) 州에서 1970년에 제정되었다 (Surprenant, 1985, p. 15). 이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된 정보의 비밀유지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즉, 이 법은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시민의 권리 보호 뿐만아니라 데이터가 수집, 축적, 그리고 이용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의해 제시될 가이드라인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그후 越境데이터유통을 통제하는 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20여 국가에서 제정되었다 (Bender, 1988, p. 231). 그러한 법이 여러 국가에서 제정되었던 동기는 국제적으로 정보가 전산화되어 유통될경우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점점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호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한편 이러한 법들은 국제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의에서는 특정 국가의 개인에 관한 데이터가 타국가의 컴퓨터에 축적되어 원거리 통신시스템에 의하여 액세스할 수 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越境데이터유통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Bender, 1988, p. 230). 越境데이터유통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만 越境데이터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며 더욱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는 시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越境데이터유통에 관한 논쟁은 1977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에서 비개인적 데이터 (nonpersonal data)의 보호에 관한 토론으로 진지하게 발전되었다. 비개인적 데이터는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포함하지만 논쟁의 핵심은 비지니스 정보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월경데이터유통의 영향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타국가의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이는 월경데이터유통에 관한 논쟁의 초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국제정보유통이 개인적 차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국가간의 비지니스 정보의 유통에 따른 효과로 관심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초기 논의들은 월경데이터유통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유발하였으며 1977년 Intergovernmental Bureau for Informatics (IBI) 회의에서 다음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Bender, 1988, p. 231) :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 및 처리하기 위하여 타국가로 유출하거나 특정 국가나 그 국가의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유입한 나라에서 유출국의 정부가 자유로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월경데이터유통은 국가주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로써 뿐만아니라 정보의 국제적 차원에서 인식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제정보유통 분야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조에 대한 요구가 인식되어져야 한다.”

2.2 정보유통의 국제화

1980년 Intergovernmental Bureau for Informatics (IBI) 회의에서 越境데이터유통에 관한 정책이 논의되기 이전에는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적 상호의존성 (국가종속의 가능성도 내포)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Jacob & Rings, 1986, p. 140).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월경데이터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Data)”를 작성했는데 개인과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것으로써 월경데이터유통의 핵심적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저해하는 요인과 가입국간의 이해관계를 설명하며,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국가적, 국제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1983년 유럽회의 (Council of Europe)에서 서구 유럽의 월경데이터유통에 대하여 꾸준히 노력한 가입국들 간의 결속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越境데이터유통에 대하여 국가들간의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198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국은 양분된 견해 즉, “정보의 자유유통” 또는 “정보규제”로 대립되었다. 198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월경데이터유통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ransborder Data Flow)”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월경데이터유통의 증대에 따른 이익과 시장효과만으로는 정부의 합법적 관심에 대응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국은 데이터 및 정보의 액세스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정보교환에 불공평한 저해요인을 제거하기로 동의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선언은 다양한 정보원이나 효과적 정보서비스에 액세스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이익을 강조한 최초의 국제적 노력으로, 가입국의 국가정책과 목표가 월경데이터유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이 선언에 조인한 가입국은 국제 정보산업의 개발을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적 의존도를 줄일 뿐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가속화하여 국내자원의 통제를 확립할것을 동의하였다. 다양한 정보상품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네트워크도 세계 각국의 경제와 무역을 결코 지배할 수 없으며,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고유의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요구와 능력에 따라서 정보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1987년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은 월경데이터유통에 관한 여러 차례 회의 결과 “글리네린 선언 (Glenerin Declaration)”으로 알려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Bender, 1988, p. 232). 각 국의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인정하고, 각 국의 도서관 시스템과 같은 방법을 모색하여 특정 정보의 생산 및 제공을 공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越境데이터유통의 문제에 대한 3개국의 공동노력은 “3개국, 더 나아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어느 국가

든지 체계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것이었다.

미국은 정보부문을 비롯한 서비스 영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협상에 대응하기에 자국의 서비스 분야가 빈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UR 서비스 협상에서 한국은 전자사서함, EDI, 온라인 정보처리 및 검색 등 부가통신 서비스 분야만 개방하기로 타결되었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1) 어떠한 국제기구가 정보서비스에 대한 협정, 가이드라인, 조약, 또는 규제를 조정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리고 2) 정보서비스 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국제정보유통 관련기구의 활동

지난 40여년 이상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는 정보유통구조 및 국제정보정책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간기구는 100여년 이상 존재하였으나, 기구의 범위와 다양성은 UN과 관련전문기관의 형성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크게 발전하였다. 즉, 1940년대 이후에 이러한 기구들이 다양한 형태, 크기, 그리고 관심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

소수 기구만이 정보관련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1970년대 들어서 정보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고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국제정보유통이 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여러 정보관련기구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제정보유통과 관련된 문제들은 더욱 복잡해졌다. 첫째, 선진국들은 자국의 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선진공업국의 견해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장과 대립하게 되었다. 둘째, 후진국들은 자국의 빈약한 정보산업이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침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혼합되어 프라이버시, 국가적, 문화적 및 경제적 주권, 그리고 과학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을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주요한 쟁점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정보유통의 정책 과제는 폭넓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유네스코나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여러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가 관여하고 있다.

3.1 유네스코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s)

비록 국제정보유통이 오랫동안 이루어졌으나 1945년에 Unesco의 설립과 함께 유네스코의 도서관 프로그램은 이 분야의 국제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제 도서관 협회인 즉,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IFLA) 및 국제도큐멘테이션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Documentation, IFD)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유네스코는 국제 도서관 커뮤니티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네스코의 주요 업적은 개발도상국의 국립도서관 및 정보하부구조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Williams, 1988, p. 3). Unesco의 UNISIST와 National Information System (NATIS) 프로그램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앙화된 문헌 및 정보배포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도록 유도하였다.

1976년에 유네스코는 독자적 위원회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그에 따른 효과를 조사하도록 요구하였다. MacBride Report는 越境데이타유통의 딜레마를 포함하는 가장 흔히 인용되는 문헌으로써 신국제정보질서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NWICO)의 문제해결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Surprenant는 “Global Threats to Information”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양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Surprenant, 1985).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통신이나 정보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에,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주장을 정보의 자유유통을 규제 또는 제한하는 노력으로써 간주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리하여 유네스코는 선진국들로부터 개발도상국과 동구 공산국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한다고 많은 공격을 받았다.

3.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네스코는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이해에 대하여 강조하는 반면, 대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의 토론장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1980년대를 위한 정보, 컴퓨터, 및 통신정책에 관한 각료회의

(High Level Conference on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ies for the 1980's)"에서 나온 문헌에 따르면, 가입국의 정책적 관심은 통치권, 고용, 프라이버시 보호, 경쟁과 협력,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발전 등에 관한것이었다 (Rosenberg, 1982, p. 16).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자발적으로 국제적 협약을 협상하였으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무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시각에 관한 문제, 월경데이터유통, 그리고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인한 실직과 같은 경제적 문제 등을 연구하며, 가입국들이 정보, 미디어 및 통신규제를 위한 조정된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3.3 Intergovernmental Bureau for Informatics (IBI)

이른바 "informatics"는 정보, 컴퓨터, 및 통신등과 관계되는 광범위한 영역을 내포하는 용어로써 주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다. 40여개국 이상 참가하고 있는 이 국제기구는 유네스코와는 달리 컴퓨터 및 통신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월경데이터유통에 관한 정책을 주요한 의제로써 다루고 있다. UN, UNESCO, 또는 UN 기관 등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과학적 연구와 컴퓨터 교육, 컴퓨터 훈련,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정보교환을 목표로 한다.

3.4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현재 국가간의 전기통신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구는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관 중의 하나인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 1865년 창설된 국제전신연합이 이 기구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첫째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전 회원국간의 국제협력을 유지 증진하고, 둘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기통신분야의 발전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셋째 기술적 시설의 개발과 능률적인 운용을 촉진하고 전기통신업의 능률을 개선하며, 넷째 상기 목적을 위해 각 회원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표준을 따르고 각 국가마다 쌍무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복잡

한 상황을 피하고 단일의 다자간 협정을 채택하도록 조장한다. 상설기관으로는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IFRB: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ration Board),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CCITT: Consultative Committee on Telegraph and Telephone),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CCIR: Consultative Committee on Radio-Communication) 등이 있다 (Jacob & Rings, 1986, p. 126).

3.5 국제통신위성기구 (INTELSA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Organization)

국제통신위성기구는 통신위성을 쏘아올려 운용관리를 하는 국제기관으로 1964년에 발족하여, 현재 110국이 가입하고 있다. 전세계에 걸친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여 국제적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위성 시스템으로 많은 국제적 기술협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국제 공중 회선과 TV 전송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1984년부터는 북대서양지역에서 디지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국들은 미국정책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는데, 이는 상업소유권과 위성통제의 경쟁으로 인한 INTELSAT의 경제적 생존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Jacob & Rings, 1986, p. 126).

3.6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통일된 표준이 요구되는데 표준을 만드는 기관으로써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Consultative Committee on International Telegraph & Telephone),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미국립표준연구소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특히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 Z39 (NISO) 등이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장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산하에 전문 분야에 따라 기술 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TC)가 있으며, 그 밑에 각종 작업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Subcommittee, SC)가 있다. 컴퓨터 및 정보처리 분야는 TC 97인데 그 밑에 15개의 SC와 약 60여개의 작업 그룹 (Working Group, WG)이 있으며 300여개의 작업

항목이 있다. 여기서 정하는 표준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전문 용어, 그리고 데이터 통신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미국립표준연구소 (ANSI)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미국 대표기구이며, 특히 ANSI Subcommittee X3는 전산 및 데이터 처리에 관계된 표준 (NISO가 미국의 민간기관에 관여함)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서관, 출판사 및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을 개발한다 (Jacob & Rings, 1986, p. 127).

4. 국제정보유통의 정책과제

경제의 서비스화·소프트화는 이제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으며, 경제활동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유통 분야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국제거래 (서비스 무역)의 일환으로 國際的整合性을 확보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국제 정보네트워크의 확대에 따른 越境데이터유통, 이를 바 Transborder Data Flow (TDF)의 문제가 급속히 대두되었다. 원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심으로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정보통신컴퓨터회의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에서 1980년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었다. 1990년대에 있어서 越境데이터유통 정책과제는 기업 혹은 국가관련 정보도 포함된 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국제유통으로 논의가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비밀 등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 직접위성방송 등의 문화적주권에 관한 문제, 서비스 무역, 다국적기업 활동에 있어서 고용, 생산 등의 경제적 문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정보격차로 인한 정보불균형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4.1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정보통신 분야의 비약적인 기술혁신은 ‘데이터의 집중화’와 ‘광범위한 이용’으로 개인의 신상데이터가 타인에게 노출 축적 이용되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

되고 있다. 즉, 정보기술의 발전이 정보의 수집·배포 과정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반면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또는 어디에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특히 여러 국가들이 이용가능한 국제정보시스템에 축적되어 있을 경우는 더욱 어렵다. 미국에서는 정보의 처리, 배포에 필요한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에 재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초기 越境데이터유통의 논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만일 개인정보가 타국가로 유출될 경우, 특히 정보를 유입하는 국가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부재할경우에 악용의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게 되므로 많은 국가들이 이를 우려하였다. 1970년대 초에 유럽의 국가들은 프라이버시, 이른바 데이터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이에 대응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법은 국가마다 다양하나 경제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며 전산처리된 정보에만 적용하는 포괄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법은 유럽과 비교할때 포괄적이지는 않으나, 聯邦州 정부의 법률, 헌법조항, 그리고 관습법 등이 혼합되어 미국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즉, 단편적이고 다양한 법등이 미국의 공정한 정보유통체제 (fair information practices)의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1974년의 프라이버시 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of 1974)”, 정부 정보의 원칙적 공개를 규정한 “정보의 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공정 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그리고 “재정 프라이버시 권리법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등이 있다 (Bortnick, 1985, p. 165). 미국과 유럽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법적 접근의 차이는 그들 간의 다양한 법적 기반과 시각을 반영해 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개인생활 침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는다. 실제적으로도 미국 프라이버시 법의 대상은 개인을 위한 것이나, 반면에 유럽의 법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것이다.

비록 프라이버시 접근에 대한 방법이 다르지만 유럽과 미국의 의도는 개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정보유통의 확립에 대한 전반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정보유통의 제한 및 타국가 기업의 운영을 제한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규제의 적용은 많은 관심을 자극하였다. 법인, 이른바 기관 또는 기업에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유럽의 데이터보호법 조항은 특히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프라이버시 법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포괄적 협약

으로 다국적기업이 참여국들간의 간섭없이 정보유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두 가지 노력이 착수되었다.

유럽위원회 (Council of Europe)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Bortnick, 1985, p. 165). 유럽위원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제정·조인하였으나, 위원회의 가입국들은 동등하게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게 데이터유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유럽위원회의 가입국이 아닌 미국의 경우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포괄적인 법이 없는 이유로 특정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데이터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이 조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유럽위원회의 조약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구속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승인된 목적에 한해서만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 개인이 그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여러 국가의 다양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을 조정하고자 했다. 미상무성은 다국적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의하여 채택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프라이버시는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개인 생활의 침해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지어 많은 문제들이 논쟁되고 있다. 越境데이터유통을 위한 규칙과 규제는 국가마다 다양하여, 일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특정기관이 정부에 등록을 해야하며, 그리고 그외의 국가에서는 준수해야 할 규칙등이 있다. 정보를 유입하는 국가에서 유출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게 될때 월경데이터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이다. 비록 프라이버시가 국가마다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지만, 개발도상국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데이터 보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적인 컴퓨터망과 인공위성을 통해 타국의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데이터에 대한 수집, 이용의 제한 및 개인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의 이용은 프라이버시, 공공의 복지, 국가의 안전 및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로서의 가능성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정보공개제

도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건전한 정보유통 체계를 형성하는 관건이 된다.

4.2 국가주권

越境데이터유통에 대한 모든 국가의 주요 관심사는 국가주권의 독립, 즉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전반에 걸쳐 정부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이라고 하겠다. 제3세계의 국가와 일부 선진국에 의해 표명된 지배적인 우려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이른바 “정보 초강대국 (information super-powers)”에 지나친 의존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와 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1986년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65%의 데이터베이스 생산업자, 그리고 북미 지역에 위치한 높은 비율의 기술 제공업체를 추산할 때 제3세계 국가의 우려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Bender, 1988, p. 232).

정보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특히 국가비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제력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보기술의 활용은 이러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자국의 중요한 데이터가 타국가의 컴퓨터에 축적·처리될 경우 정보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국가는 타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어 국가주권이 침식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소유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동의없이 도중에서 빼앗길 수 있고, 의도적으로 또는 사고와 자연적 재해로 인하여 파괴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타정부의 반대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가 거절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의 Malmo 지역의 소방부에 화재경보가 울렸을 당시 그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던 미국의 클리브랜드 (Cleveland)시에서 정전이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정보 접근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대표적 경우는 1980년 이란의 인질 사건 당시 미국은 국제통신위성기구 (INTELSAT)에게 이란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청하였다 (Bortnick, 1985, p. 166).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선진국의 그러한 횡포는 많은 국가에 의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스위스 정부는 타국가의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대한 의존 문제를 연구한 결과

중요한 정보처리 활동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조처가 요구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캐나다 또한 비슷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 준비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주권에 결정적인 정보의 통제력을 손실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월경데이타유통을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Duchesne, 1990, p. 365).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의 두려움은 더욱 고조되는데 브라질의 정보정책이 가장 대표적 경우이다. 브라질은 정보처리 및 통신장비,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서 타국가의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다. 제3세계 국가들은 “정보 초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는 반면에 정보기술의 개발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정보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하여 국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를 취했다. 제3세계의 일부 국가는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국의 기술정보에 대한 잠재적 이익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4.3 문화적 주권

문화적 측면에서 외국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타국가의 미디어의 지배, 그리고 뉴스와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등은 특정 국가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3세계 국가는 국경간의 정보유통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빈약한 문화 산업을 지닌 국가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국가에 의해서 뉴스나 기록적인 방송에 의하여 문화적으로 과도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은 越境데이타유통을 타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한 문화적 제국주의 혹은 문화적 지배의 견지에서 간주하고 있다.

문화적 종속을 미디어에 적용해볼 때, 가장 자주 거론되는 매체가 직접위성방송 (Direct Broadcasting System, DBS) 논쟁이다. 3개의 정지궤도상의 위성으로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방송방식을 통상의 TV 방송과는 달리 타지역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불가피한 전파침투 (spill-over)로 인한 문제점은 자못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전파침투를 줄이기 위해 도달하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 전파를 좁히는 성형 빔 안테나가 개발되었지만, 전파침투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공산국가들은 통제되지 않는 국제위성방송이 그들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직접위성방송에 대해 프로그램 내용의 제한이라든가 사전동의를 주장하는 규제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대다수 제3세계 국가, 구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국가, 그리고 서구 발전국들 중의 일부이다. 이러한 기술의 영향은 유럽회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유엔 등의 국제회의에서 많은 논쟁대상이 되었다. 주요 쟁점은 직접위성방송에서 타국가로 전파가 전달되기 전에 사전의 동의를 요구하는것이 국가의 권리라는 것이다. 서구 발전국들이 위성 전파의 자유로운 유통을 옹호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방송이 쌍방간에 작용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유통이라고 주장하며 흔히 국제정보유통의 내용을 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의 통제력에 대한 상실이나 외국 정보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문화적 영향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서구 선진국의 문화가 타국가로 유입되는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은 월경테이타유통의 특정 국가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장 공격받기 쉬운 대상이다. 오늘날 국제방송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공통된 여론은 없으나, 개발도상국은 방송의 사전심의를 선호하는 반면에 미국측에서는 방송은 결코 규제되어서는 안된다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 비록 유엔에 의하여 여러차례 토론의 주제가 되었지만 이러한 논쟁에 대한 세계커뮤니티에 의한 협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는 않고 있다.

타국가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은 자국의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 전반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공업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그외의 국가들은 선진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유럽에서 생산된 정보원을 회원국의 공동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유럽의 이용자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1979년에 Euronet/Diane 시스템을 설립하여 미국의 정보산업 독주에 대응하였다 (Bortnick, 1985, p. 166). 현재 유럽의 Postal, Telegraph, and Telephone Authorities (PTTs)에 흡수된 Euronet/Diane 시스템은 1979년부터 성장하여 500여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Bender, 1988, p. 232). 유럽은 미국의 정보원에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유럽지역에 데이터베

이스 산업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지역 기반의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유럽공동체의 움직임은 개방체제를 주장하는 타국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유럽은 정보부문에서 미국의 독주를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면서 IBM과 같은 미국의 거대한 다국적기업을 견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세계적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실현되고 있으나, 통신 네트워크으로 인하여 정보개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검열없이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자유로운 액세스와 함께 국경간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선진국으로부터 쇄도하는 방송이나 데이타베이스를 저지하고자 통제하기를 원한다. 즉,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주장은 선진국의 보도가 편견이 있으며 선진국의 “문화적 제국주의 (Cultural Imperialism)”를 반영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신국제정보질서 (NWICO)”에 대한 요구와 보도의 통제에 대응하는 선진국의 확고한 입장간의 논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4.4 경제적 주권

20세기 후반들어 세계경제는 전자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도된 수많은 산업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새로이 탄생된 이들 산업은 정보의 수집, 가공, 처리, 저장, 유통, 판매를 수행하는 산업 및 관련 제조업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같이 정보산업의 발전은 전체적으로 볼때 국민경제에서 정보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 세계 정보산업의 시장규모는 1983년에 2천 68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후 10년간 약 4배 가량 성장해 1992년에는 1조 48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정보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1971년에 GNP의 1.0%에 불과했던 정보산업이 1984년에는 무려 6.21%로 성장하였다. 정보산업시장의 부문별 비중추이는 이들 선진국의 경우 GNP의 4-7%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GNP보다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명호, 1991, p. 30). 각 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는 정보산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낮아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비해 정보처리업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비중이 1.2% (1985년)에서 1.7% (1988년)로 늘어났다. 또한 정보기기산업도 그 성장률이 GNP 성장률보다 빠른 편이며, 특히 최근 일본에서의 정보기기시장의 획기적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국제정보유통의 경제적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고용의 문제이다. 우선 정보기기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정보화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효과증대와 제품가격의 저하로 사회 전체구매력의 증대를 가져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90년에 국제 정보처리 분야의 시장은 1조 달러에 달할것이라고 평가하였다 (Bender, 1988, p. 233). 따라서, 정보처리 산업의 기반이 확고한 국가들은 급속도로 팽창하는 전 세계의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즉, 선진국들은 정보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만들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관련 분야에서 선진국의 시장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모든 조처를 취해왔다. 브라질은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타국의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있어서 정부 승인을 요구하는등 자국의 정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설립하였다. 이외에 브라질은 자국으로 유통되는 정보 처리량을 통제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브라질의 시도는 자국의 정보산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정보산업의 독점에 대응하여 유럽공동체는 유럽내에서 단일화된 정보시장을 개척하고자 정보공유 (Euronet) 및 연구개발 활동 (Esprit)을 위한 다양한 공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의 국제정보유통에 대한 규제시도는 자국 정보산업의 성장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越境데이터유통과 관련지어 경제적 측면에서 논쟁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문제는 무역규제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 정보산업분야의 무역과 경제개발 측면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국제정보유통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논쟁이 되고있다. 이러한 장벽은 정보 제공업체가 특정 시장에 투자하거나 또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때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무역의 관세장벽에는 Post,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s (PTTs) 네트워

크 사용에 대한 가격의 차별화나, 타국가의 정보제공업자가 경쟁할 수 없도록 자국 정보산업에 대한 지원금의 제공 등이 해당된다.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정보유통의 통제 및 자국의 정보기술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와 일부 선진국들은 수출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이나 차별적 기술의 표준을 규제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수입 및 자국 정보의 수출에 관한 관세 및 의무의 방법으로 越境데이터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Moohan et al., 1988, p. 34). 越境데이터유통에 대한 무역관련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정보의 규제정책으로 가장 많은 손해를 보게 될 미국은 전 세계의 발전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특히 정보산업이 미국경제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자, 정보나 데이터 유통에 대한 규제는 비관세 무역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미국은 국제정보유통의 개방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선언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보통신관련 문제의 해결과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는 기구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문제를 꼭넓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월경데이터유통의 경제적 측면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정보부문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포함시켰다.

정보기술의 발전을 처음으로 응용한 산업국가는 제조업 분야의 커다란 생산성 향상을 기록하였다. 기술적 선진국의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은 상대적으로 제3세계 국가에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 (Slamecka, 1985, p. 179). 첫째, 수출지향적 경제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적 경제구조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적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둘째, 자동화는 생산활동의 기술적 프로파일을 변화시켜 다양한 작업과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로 자동화를 이용한 기술선진국 기업의 증대된 생산성이 제3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이나, 반면에 정보기술의 발전이 제3세계 국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정보기술 자체는 새로운 산업, 즉 정보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정보부문은 부품개발, 생산 및 조립으로부터 유지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하드웨어 관련 기술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은 개발도상국에게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분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타국가에서 축적, 운영되는 자국의 정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경제에 미치

는 그 국가의 손실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세계 비지니스 커뮤니티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은 통신 기반구조를 현대화하였고 컴퓨터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의 액세스를 가속화하였다. 즉, 다국적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국제정보유통의 경영은 회사의 재산이나 제품의 관리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운영에 가장 필수적 조건으로써 전 세계의 정보원에 액세스하고 있다. 그러나 越境데이터유통으로 인한 고용, 무역규제, 생산성, 그리고 경쟁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국제 커뮤니티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할때까지는 월경데이터유통의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4.5 정보유통의 불균형

커뮤니케이션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활동 전반의 중심이 되며, 신국제정보질서 (NWICO)는 정보통신분야에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통신분야의 많은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를 혼란하게 하였다. 신국제정보질서는, 이른바 New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NIO), New World Information Order (NWIO), 그리고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NWICO)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으며, 소위 “정보제국주의 (Information Imperialism)”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들의 노력을 구체화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976년에 유네스코는 독자적 위원회가 커뮤니케이션 문제 및 그에 따른 결과를 조사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유네스코의 보고서로 인하여 선진제국은 “정보제국주의” 또는 “신식민주의”라는 비난을 받게되었고, 그 결과 계속된 논쟁은 1984년에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를 초래하였고 1년후에 영국도 탈퇴하였다. 개발도상국은 세계 통신구조의 통제를 주장하는 반면에, 정보의 자유유통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입장과는 여러 측면에서 대립되고 있다. 미국은 정보유통을 통제하고자 하는 요구를 언론, 신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 수정의 제1항 (First Amendment)”과 “보도자유의 원리”에 모순되는 독재주의 및 겸열제도의 정후로 써 보고 있으나, 대조적으로 제3세계 국가는 미국의 반대 입장을 越境데이터유통을 최근에 독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해관계 측면에서만 보고있다. 국제정

보유통 문제에서 미국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인은 미국의 경제 활동에서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강력한 역할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대한의 통제력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정책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타국이나 국제기구의 정책과 미국과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1980년에 U.N. 정보개념의 태동과 함께 가열된 논쟁 이후로 국제통신 및 정보자원의 통제와 이용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균형이 심각해졌다. 1983년 U.N.에 제시된 브라질의 정보정책은 越境데이타유통 문제에 대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써 개발되었다(Moohan et al., 1988, p. 34). 국제적으로 정보유통이 증대됨에 따라, 소위 “정보부국(information-rich country)”과 “정보빈국 (information-poor country)”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즉,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는 국제정보유통에 의하여 더욱 촉진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보산업의 기반구조를 형성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독점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기술적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국가의 정보기술 개발은 선진제국에 비교하면 부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원인은 대중 시장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선진사회에서 정보기술의 용용은 디자이너 또는 제공업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성에 의하여 추진되어진다. 즉, 산업화 국가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비산업화 국가는 정보기술의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 배경이 있는 개발도상국은 타국가의 정보를 액세스함에 있어 여러 저해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장벽에는 온라인 서비스의 비용, 외국환의 규제, 적절한 교육의 부족, 문현 자체에 액세스의 어려움 등이 포함된다.

자유로운 월경데이타유통은 개인, 정부 또는 국가의 기타 중요한 원칙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통치권,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및 정치적 독립)과 대립되기도 한다. 정보의 자유유통을 반대하는 제3세계 국가들은 선진공업국과의 정보교환을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보유통의 불균형 (Information Imbalance)”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제3세계 국가에게 “정보의 자유유통”은 산업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방적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바 “신제국주의”라는 표현이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우려는 제3세계 국가 뿐만아니라 유럽의 일부 선진국들도 특정 상황

에서는 유사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월경데이터유통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를 심화할 수도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정보통신의 수용을 정보종속, 문화종속의 입장에서 거부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저개발 상태인 컴퓨터기술과 정보통신의 접근불능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에 참여하는 길이 봉쇄당하고 따라서 서방세계에 대한 종속이 지속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선진공업국 우위의 국제위계질서를 봉괴시키고 평등한 신국제질서와 경제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그 위계질서의 기초가 되는 발전정보 (Developmental Information)와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발도상국들은 “정보의 자유유통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월경데이터유통에 대한 논의는 한 국가의 정치, 경제적 이해 그리고 국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곧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 후진국간의 정보유통의 불균형은 곧 두나라간의 지배 종속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세계적 정세는 심각한 정보유통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정보사회에서 국제관계는 힘의 원천인 정보를 소유 혹은 조작함으로써 한층 더 불균등한 관계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 론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성질상 산업혁명이 초래한 중심부--주변부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새로운 국제 및 경제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정보산업 분야를 국가의 중점지원분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국제 정보네트워크의 확대에 따른 월경데이터유통, 이른바 Transborder Data Flow (TDF)의 문제가 급속히 대두되었다. 원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심으로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보통신컴퓨터회의에서 1980년 가이드라인이 책정되

었다. 이로써 데이터 해본 (규제가 엄격한 나라로부터 완화된 나라로 데이터가 유출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유출측에서 제한을 두는 제도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쟁점으로 되어 왔던 문제해결의 길이 열렸다.

1990년대에 있어서의 월경데이터유통 문제는 기업 혹은 국가관련 정보도 포함된 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국제유통으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정보통신컴퓨터회의에서는 월경데이터유통 연구그룹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의 검토를 진행해왔는데, 1985년에 '국제 데이터 자유화선언'을 하였다. 그 골자는 월경데이터유통에 대한 부당한 장벽의 거부, 월경데이터유통 관련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조화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한 융통성있는 제언으로 결정되었다.

국제정보유통은 각국의 산업육성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선진제국 중에서도 미국과 같이 국제정보유통의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나라와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신중론을 평하는 나라로 나뉘고 있다. 한편, 정보유통의 규제는 비관세장벽이라 하여 통상문제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으나 데이터와 정보서비스 분야의 조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UR) 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의 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보다 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전문기관을 통한 국제 조정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명호, 조 신. 1991. “선진국의 정보통신산업의 역할과 전망.” *통신정책연구* 6(1) : 17-41.
- Bearman, T. C. 1986. “National Information Policy: An Insider’s View.” *Library Trends* 35(1): 105-118.
- Bender, D. R. 1988. “Transborder Data Flow: An Historical Review and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Special Libraries* 79(3): 230-235.
- Bortnick, J. 1985.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Polic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6(3) : 164-168.
- Duchesne, R. & Lehn, A. 1990. “Transborder Data Flow.”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5) : 360-373. New York : Marcel Dekker.
- Heitzman, J. 1990. “Information Systems and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Information Processing and Development* 26(4): 489-502.
- Horowitz, R. G. 1993. “Literacy and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 Could Librarianship Make a Difference?” *IFLA Journal* 19(2): 170-180.
- Jacob, M & Rings, D. 1986.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Library Trends* 35(1): 119-169.
- Moohan, G., Morton, E., & Rimmer, S. 1988. “Transborder Data Flow : A Review of Issues and Policies.” *Library Review* 37(3): 27-37.
- Rosenberg, V. 1982. “National Information Policy.”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 17): 3-32. New York: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s.
- Slamecka, V. 1985.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Third World.”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6(3): 178-183.
- Surprenant, T. 1985. “Global Threats to Information.”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 20): 3-25. New York: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s.

Williams, R. V. 1988. "The Role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International Information Transfer and Policy." *Special Libraries* 79(1): 1-8.

ABSTRACT

International Information Flow and Policy Issues

Mee-Jean Kim*

International information transfer has increasingly been a topic of concern since the 1970s and has been discussed in numerous forums, including the OECD, the UN, Unesco, and ITU. It is made possible by the convergence of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which has facilitated the transfer of machine-readable information across national boundaries with unprecedented speed and efficiency. While information flow between nations occupies an increasing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n advanced countries, the developing countries continue to experience information disparity. Yet even with this situation, information remains a major resource and commodity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Neither its value or its threat can be ignored by any nation.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policy should be constructed with cognizance of the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technological aspects of information.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Jeonju University